

# 高麗時代의 瓷器所와 그 展開\*

李 喜 寬\*\*

머리말

I. 瓷器所의 地方統治體制上의 性格

II. 瓷器所의 所司 問題

1. 所司의 存在 與否 問題

2. 所司의 構造와 所吏-특히 大口所의 경우-

III. 瓷器所의 展開

맺음말-大口所 中心 瓷器所體制에 대한 약간의 斷想-

## 머리말

고려 청자는 중국 越州窯의 영향으로 제작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器形과 釉色과 文樣 등에서 그와 다른 독특한 세계를 연출하였다. 이러한 고려 청자에 대하여 고려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宋代의 중국인들 또한 중국의 여러 名窯의 청자를 제쳐두고 고려 청자를 天下第一의 名品으로 일컬었다.

고려시대에는 여러 지역의 窯에서 다양한 품질의 청자가 제작되었다. 이 가운데 규모나 품질의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窯는 康津窯였다. 康津窯에서는 고려의 거의 전 시기에 걸쳐 간단없이 최고 품질의 청자를 제작하였다. 康津郡 大口面과 七良面 일대에 산재해 있는 많은 靑磁窯址와 靑磁破片들이 이를 웅변한다.

康津窯가 다른 窯들과 달리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최고 품질의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3-041-A00006).

\*\* 湖林博物館.

청자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 단지 康津窯 生産主體의 자의적인 노력의 결과로만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보다 좀더 근본적으로 청자생산체제상의 구조적인 뒷받침에 힘입은 바 크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필자는 그것이 瓷器所體制라고 확신한다.<sup>1)</sup> 康津窯가 기본적으로 大口所와 七陽所라는 자기소의 토대 위에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말하자면 康津窯의 청자생산과 자기소체제는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던 셈이다.

이제까지 瓷器所는 주로 所에 대한 연구의 일부분으로 간단하게 언급되어 왔을 뿐,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sup>2)</sup> 이에 따라 그 연구의 수준도 높지 않은 편이다. 자기소가 국가에 磁器를 공급하는 특수한 지방행정단위였다는 사실 정도에 대해서만 동의가 이루어졌을 뿐, 그것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있게 논의된 바가 없다. 특히 자기소의 지배기구인 司-所司-의 문제는 그것의 存在 與否에 대한 초보적인 논의만이 진행되었을 뿐이다. 자기소의 전개와 관련된 문제는 아예 논의 자체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요컨대 자

1) 李喜寬, 2003 「高麗 翡色靑磁의 出現과 素燒구이(素燒), 『對外交渉으로 본 高麗靑磁』 강진청 자자료박물관, 36-37쪽.

2) 자기소에 대한 專論으로는 權丙卓, 1993 「高麗後期 陶磁器所의 經營形態, 『傳統陶磁器의 生産과 需要』 嶺南大學校出版部와 宋聖安, 1995 「高麗前期 瓷器手工業—瓷器所를 中心으로—, 『慶大史論』 8 慶南大學校 史學會가 있다. 전자는 고려 후기 자기소의 人的構成과 物的要素 및 生産關係를, 후자는 고려 전기 자기소의 기원과 생산상태 및 국가의 지배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대체로 개략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다. 그밖에 所一般과 자기소와 관련이 있는 여러 개별적인 所들에 대한 연구성과는 徐明禧, 1990 「高麗時代 「鐵所」에 관한 研究, 『韓國史研究』 69, 韓國史研究會, 1-3쪽; 宋聖安, 앞의 논문, 2-3쪽; 윤경진, 2002 「고려시기 所의 존재양태에 대한 試論—군현제와 생산방식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13 한국중세사학회, 41-43쪽 등에 정리되어 있다. 다만 그 후에 김기섭과 이정신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公州牧의 鳴鶴所를 전자는 鐵所라는 입장에서, 후자는 炭所라는 입장에서 분석하였다(김기섭, 2003 「고려 무신집권기 鐵의 수취와 명학소민의 봉기, 『한국중세사연구』 15 한국중세사학회; 이정신, 2003 「高麗時代의 炭所와 명학소의 위치, 『한국중세사연구』 15 한국중세사학회).

기소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조차 거의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이 필자가 자기소에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한편, 자기소에 대한 연구는 고려시대의 지방통치체제에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에 대한 연구와 직결되어 있다. 다 이는 바와 같이, 고려 시대에는 金所·銀所·銅所·鐵所·瓷器所·紙所·墨所 등 다양한 所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所들은 오늘날 그 위치조차 확인하기 힘들다. 설사 그것이 확인된 경우라도 그 시간적 궤적까지 보여주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여기에서 예외적인 것이 바로 자기소이다. 자기소가 설치되어 있던 지역의 窯址들은 자신들의 堆積層을 통하여 각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변천과정까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大口所와 七陽所가 설치되어 있던 康津窯이다. 이 점에서 소에 대한 이해의 지름길은 바로 자기소의 연구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한 窯址와 堆積層으로부터의 다양한 정보들을 토대로 자기소에 대하여 보다 실제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자기소에 주목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자기소의 성격과 구조 그리고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중국 陶磁가 主流를 이루고 있는 세계 陶磁史에서 그에 버금가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고려 청자의 생산체제를 파악하고 아울러 그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 瓷器所의 地方統治體制上의 性格

瓷器所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지방 통치체제에 속해 있었으며, 또 거기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견해는 크게 둘로 갈려 있다. 그 하나는 자기소를 포함한 所들이 일반 郡縣과는 별도의 특수한 행정구역으로서 통치체제상 중앙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편의상 이것을 '제1견해'라고 부르겠다).<sup>3)</sup> 또 다른 하나는 그것들이 일반 군현의 촌락에 설치되어 기본적으로 중앙이 아닌 군현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다(편의상 이것을 '제2견해'라고 부르겠다).<sup>4)</sup>

양자 가운데 어느 쪽을 따르는가에 의해 자기소의 지방통치체제의 성격은 크게 달라진다. 즉 제1견해를 따를 경우 자기소는 그것이 위치해 있는 군현의 통치체제에서 독립하여 중앙의 직접적인 명령을 따르는, 다시 말하면 군현에 준하는 행정구역이 되는 셈이다.<sup>5)</sup> 반면에 제2견해를 따를 경우 자기소는, 수취체제상의 부담 내용이 다를 뿐, 기본적으로 군현의 지배를 받는 일반 村들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sup>6)</sup> 과연 실제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었을까.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료가 다음 기록이다.

A-① 京畿州縣은 常貢 외에 徭役이 무거워 백성들이 고통스러워 날로 도망가고 흩어지니, 主管所司는 界首官에게 常貢과 徭役의 많고 적음을 물어 酌定하여 시행토록 하라. ② 銅·鐵·瓷器·紙·墨 등의 雜所는 別貢物色을 징

3) 제1견해를 대표하는 학자는 北村秀人이다(1969 「高麗時代の「所」制度について」 『朝鮮學報』 51, 朝鮮學會, 44-46쪽 참조). 金炫榮도 기본적으로 제1견해의 입장에 서 있다(1986 「고려시기의 所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論』 15, 서울大 國史學科, 117쪽).

4) 제2견해를 대표하는 학자는 朴宗基이다(1990 『高麗時代 部曲制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52-156쪽 참조). 제2견해를 지지하는 또 다른 학자로 윤경진이 있다(앞의 논문, 44-47쪽).

5) 北村秀人, 앞의 논문, 15-17쪽.

6) 朴宗基, 1990 앞의 책, 154-156쪽 ; 윤경진, 앞의 논문, 44-47쪽.

수하는 것이 지나쳐서 匠人들이 고통스러워 도피하니, 바라건대 所  
司는 각 所의 別貢과 常貢의 많고 적음을 酌定하여 보고하고 裁可를  
받도록 하라. (『高麗史』 78 食貨志 1 貢賦 睿宗 3년 2월 判)

K C I

위 기록은 당시 백성들에 대한 수취의 과중함으로 인한 流亡 현상을 막기 위하여 국가에서 취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京畿州縣의 '백성'들과 자기소를 포함한 所의 '匠人'들에 대한 조치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는 '主管所司'가 界首官에게 물어서 京畿州縣의 常貢과 徭役을 酌定하여 시행하게 한 반면, 후자의 경우는 '所司'가 직접 각 所의 常貢과 別貢을 酌定하여 보고하고 재가를 받으라고 하였다.

이 점을 토대로 제1견해에서는 자기소를 포함한 所들이 일반 州縣과 지방통치체제상의 계통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즉 이 견해에서는 貢賦나 徭役 등의 수취에 있어서 州縣의 경우는 貢賦를 主管하는 中央官司(戶部)-界首官-州縣의 계통을 밟은 반면, 所의 경우는 界首官의 관여 없이 직접 所의 貢賦를 주관하는 中央官司-所의 계통을 밟은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제2견해에서는 그와 같이 所가 지방통치체제상 중앙관사와 직결되어 있었다고 파악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 견해에서는, 사료 A-①의 '主管所司'와 사료 A-②의 '所司'는 동일한 官司이며, 자기소를 포함한 所에 대한 조치를 따로 떼어 언급한 것은 州縣들과 지방통치체제상의 계통이 달라서였다고보다는 단지 그것의 경우가 流亡 현상이 더욱 심했던 데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의 일면이 반영된 결과일 뿐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所가 지방통치체제상 中央官司가 아닌 郡縣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sup>8)</sup>

사료 A의 내용만 놓고 보면, 어느 쪽의 해석도 가능하다. 이 문제에 주목한 초기에는 제1견해가 유력하였으나, 근래에는 제2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형국이다. 과연 요즈음의 대세와 같이 자기소를 포함한 所들은

7) 北村秀人, 앞의 논문, 44-46쪽.  
8) 朴宗基, 1990 앞의 책, 152-156쪽.

군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일반 촌락과 같은 위치에 있었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하여 제2견해의 논거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2견해는 제1견해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즉 제2견해는 제1견해에서 사료 A에 보이는 ‘主管所司’와 ‘所司’를 서로 다른 官司로 해석하여 일반 州縣과 所들의 지방통치체제—收取體制를 포함하여—의 계통이 서로 달랐다고 본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sup>9)</sup> 이 비판의 타당성 여부는 제2견해의 성립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하지만 사료 A의 내용 안에서 ‘主管所司’와 ‘所司’가 동일한 관사인가의 여부를 명쾌하게 가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2견해의 주장처럼 ‘所司’는 ‘主管所司’를 줄여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 반면, 서로의 主管所司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제1견해에서 ‘主管所司’와 ‘所司’를 서로 다른 중앙관사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제1견해에서는 ‘所司’ 즉 所의 貢賦를 장악한 중앙의 관사에 대해서는 明文이 없지만, (中略) 郡縣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戶部였다고 추측된다<sup>10)</sup> 하여 명백하게 양자를 동일한 관사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sup>10)</sup> 결국 이 비판은 제1견해에 대한 誤解를 전제로 한 것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최근까지도 거의 예외 없이 그러한 비판을 해왔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한편, 제2견해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의 하나로 다음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제시하였다.

B① 지금 생각건대, 新羅가 州郡을 建置할 때 그 田丁과 戶口가 縣으로 삼기에

9) 朴宗基, 1990 앞의 책, 152-153쪽. 徐明嬿와 朴宗진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徐明嬿, 앞의 논문, 8-9쪽; 朴宗진, 2000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출판부, 114-115쪽).

10) 北村秀人, 앞의 논문, 46쪽.

부족한 곳은 혹은 鄉을 두고 혹은 部曲을 두어 소재하고 있는 邑에 속하게 하였다. ② 高麗 때 또 所라고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金所·銀所·銅所·鐵所·絲所·紙所·瓦所·炭所·鹽所·墨所·藿所·瓷器所·魚梁所·薑所의 구별이 있어 각기 그 물건을 바쳤다.『新增東國輿地勝覽』3 京畿道 驪州牧 古跡 登神莊

제2견해에서는 위 기록에서 鄉·部曲의 경우는 田丁과 戶口의 면에서 縣과 연관지어 설명하면서 일반 州郡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둔다(置)고 한 반면(사료 B-①), 所의 경우는 '所라고 칭하는 것(稱所者)'이라고 하여(사료 B-②) 서로 구별한 것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 점으로부터 鄉·部曲은 郡縣에 준하는 행정단위이고, 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는 곧 所가 기존의 촌락에 부가적으로 설정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였다.<sup>11)</sup>

하지만 위 기록을 반드시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우선 所의 경우 鄉·部曲과 달리 둔다(置)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지만, 그것은 단지 所의 설치배경을 설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있어서 『東國輿地勝覽』의 撰者는 所의 설치배경보다는 그것의 종류와 기능역할 등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료 B-②에서 '高麗 때 또 所라고 칭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 대목에서 '또(又)'의 의미에 주목할 경우, 그것은 田丁과 戶口가 縣으로 삼기에 부족한 곳에 鄉·部曲을 두고, 그와 같은 또 다른 존재로서 '所라고 칭하는 것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所는 鄉·部曲과 마찬가지로 郡縣에 준하는 존재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여러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한, 사료 B가 제2견해를 제대로 뒷받침해준다고 보기는 힘들다.

제2견해에서 가장 유력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다음 기록이 아닐까 싶다.

11) 윤경진, 앞의 논문, 44-45쪽.

C 嘉林縣 사람이 達魯花赤에게 告하기를, “縣의 村落이 元成殿과 貞和院·將軍房·忽赤·巡軍에 分屬되고 다만 金所 한 村만 있습니다. 지금 鷹坊 迷刺里가 또 빼앗아 가지니 우리들은 어떻게 홀로 賦役을 바칩니까?”라고 하였다.(『高麗史』 89 列傳 2 齊國大長公主)

위 기록은 嘉林縣의 사람이 達魯花赤에게 賦役 부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 내용이다. 제2견해에서는 ‘다만 金所 한 村만 있습니다’라는 대목에 주목하여 문제의 ‘金所’가 嘉林縣內의 하나의 촌락이라고 주장하였다.<sup>12)</sup> 아울러 嘉林縣의 사람이 ‘우리들은 어떻게 홀로 賦役을 바칩니까?’라고 호소한 점으로 미루어 당시 金所가 부담한 賦役이 嘉林縣의 전체 賦役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13)</sup>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문제의 金所는 嘉林縣의 촌락의 하나로서 설정된 것이며, 자기소 역시 그러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과연 실제에 있어서 그러하였을까.

이제까지 이 사료에 주목한 학자들은 예외 없이 문제의 ‘金所’를 특정한 所로 이해하였다. 언뜻 보면 이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사료 C에 따르면, 이 당시 문제가 된 것은 ‘金所 한 村’의 奪占이었다. ‘金所 한 村’은 ‘金所’라는 이름을 가진 한 村을 가리키거나, 또는 金所가 있는 한 村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賦役 부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 嘉林縣 사람은 縣의 촌락이 모두 元成殿 등에 分屬되고 다만 ‘金所 한 村’만 남아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嘉林縣內의 특정한 한 村을 거론하며 그 村의 奪占을 막아달라고 하소연한 것이다. 물론 그 村은

12) 윤경진, 앞의 논문, 45-46쪽.

13) 박종진, 앞의 책, 116쪽 ; 윤경진, 앞의 논문, 45-46쪽.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므로,<sup>14)</sup> 그로서는 당연히 당시 탈점된 그 村의 이름을 밝혀 실상을 전하려 하였을 것이다. 이 점을 중시하면 '金所 한 村'을 '金所가 있는 한 村'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문제의 村이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표현할 까닭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金所가 아니라 村의 탈점이었다는 점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요컨대 '金所 한 村'은 '金所'라는 이름을 가진 한 村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sup>15)</sup> 다시 말하면 사료 C에 보이는 '金所'는 하나의 村名일 뿐 특정한 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sup>16)</sup> 다음의 예도 그러한 경우이다.

D 酸汁岩郷 고을 남쪽 10리에 있다. 지금은 銀所村이라고 일컫는다.〔新增東國輿地勝覽〕 15 忠淸道 沃川郡 古跡)

14) 만약 제2견해에 따라 문제의 '金所 한 村'이 嘉林縣의 특정한 촌락에 설정된 金所였다면, 그곳은 의당 '○○金所'라든가 '○○所'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다.

15) 한편, 오일순은 사료 C에서 '金所 한 村'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그곳이 예전에는 金所였으나 이미 直村化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였다(200 『高麗時代 役制와 身分制 變動』 혜안, 153쪽). 흥미있는 견해지만,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곳에서 金이 났던 관계로 그러한 村名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그곳이 예전에 金所였다가 直村化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자기소가 지방통치체제상 군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일반 村과 같은 위치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지방통치체제상에서 일반 村과는 전혀 다른 레벨에 있던 郷과 部曲 그리고 심지어는 屬縣의 경우도 흔히 그러한 直村化의 과정을 밟았기 때문이다(李樹健, 1984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431-437쪽; 朴宗基, 앞의 책, 202-204쪽; 오일순, 앞의 책, 152-154쪽).

16) 이와 관련하여 嘉林縣 사람이 "縣의 村落이 元成殿과 眞和院·將軍房·忽赤·巡軍에 分屬되고 다만 金所 한 村만 있습니다"라고 한 대목을 다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탈점의 대상이 된 촌락을 언급하면서 앞에서는 '村落'으로, 뒤에서는 '村'으로 지칭하였다. 村落은 제도적인 명칭과는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명칭인 반면 村은 군현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지방행정 단위를 일컫는 제도적인 명칭이다. 이 점을 중시할 경우, 문제의 한 촌락을 언급하면서 村落으로 칭하지 않고 굳이 村으로 칭한 것도 그곳의 행정제도상의 村名이 '金所村'이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고려시대 촌락의 명칭에 대해서는 박종기, 2002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307-321쪽을 참조하라.

즉 沃川郡에 있던 銀所村은 본래, 銀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그러한 村名으로 일컬어졌던 것이다. 아마도 그곳은 銀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金所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sup>17)</sup> 결국 위 사료도 제2견해를 제대로 뒷받침해준다고 보기는 힘들어진 셈이다.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자기소가 지방통치체제상에서 군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일반 村과 같은 위치에 있었음을 입증해줄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다음 기록들은 자기소가 村보다 상위 레벨에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 E① 永州의 梨旨銀所는 옛날에 縣이었는데 도중에 邑子가 國命을 위반함으로 廢하여 民에게 白金을 세금으로 내도록 編籍함으로써 銀所로 칭해진 것이 오래되었다. 지금 그 土人 那壽·也先不花가 어려서 禁中에서 환관이 되어 오래도록 봉사하여 그 공으로 鄉貫을 승격하여 다시 縣이 되었다. (中略) 縣司·長吏를 둔 것을 모두 처음과 같이 하였다. (『拙菴千百』 2 永州梨旨銀所陞爲縣碑)
- ② 高宗 42년에 多仁鐵所의 사람이 蒙古의 병사를 막는 데 功이 있었으므로 所를 높여서 翼安縣으로 삼았다. (『高麗史』 56 地理志 1 忠州牧)

위 기록들은 특정한 縣이 國命을 위반하여 所로 강등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所가 功을 세워 縣으로 승격되기도 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所와 縣은 경우에 따라 邑格-鄉貫-이 바뀔 수 있는 관계였다. 하지만 縣과 村 사이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실현된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자기소를 비롯한 所들이 지방통치체제상 기본적으로 村이 아니라 그 상위

17) 이 경우 村名에 보이는 '所'는 所制度와는 전혀 무관한, '곳(장소)'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미로 쓰인 '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조선 초기의 磁器所와 陶器所이다. 이 경우의 '所'도 磁器와 陶器가 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에 있던 縣과 동일한 레벨에 위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縣은 郡과 더불어 고려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지방통치단위였으며, 고려는 각각의 군현을 매개로 하여 지방을 통치하였다. 말하자면 지방통치체제상 郡縣은 中央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군현과 동일한 레벨에 있던 자기소의 경우도 중앙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 점은 다음 기록을 검토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F 制하기를, “西海道の 州郡이 兵害를 입었으니 7년간 徭貢을 면제하고, 또한 谷州·樹德 두 所의 銀貢을 5년간 감면하라”고 하였다.『高麗史』 80 食貨 3 賑恤 恩免之制 高宗 33년

위 기록은 서해도의 兵害와 관련하여 내린 制-국왕의 詔勅-이다. 이 조치는 각각 州郡의 徭貢과 所의 貢賦를 관장한 중앙관사가 시행했을 것이다. 사료 A-①에 보이는 ‘主管所司’와 사료 A-②에 보이는 ‘所司’가 이들이었을 것이다. 두 가지 일을 주관한 중앙관사가 동일한 곳이었는지 다른 곳이었는지는 갑자기 잘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각각의 일을 맡은 중앙관사는 직접 州郡의 徭貢과 所의 貢物의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의 중앙관사는 이를 토대로 州郡의 徭貢과 所의 貢物을 거두어들이고 또 이 경우처럼 면제해주기도 했을 것이다. 이는 곧 所가 州郡과 마찬가지로 중앙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과 다름 아니다. 자기소도 여기에서 예외였다고 볼 까닭이 없다.

그리고 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谷州所·樹德所와 같은 所들이 국가의 독립적인 수취단위였다는 점이다. 국가가 직접 두 所를 대상으로 貢賦 감면의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이

스스로 이 점을 말해주고 있다.<sup>18)</sup> 하지만 村들은 국가의 독립적인 수취단위로서의 위치에 있지 못하였다. 촌으로부터의 수취는 郡縣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즉 일반 郡縣의 경우 독립적인 수취단위는 村이 아닌 郡縣 그 자체였다. 이 점은 자기소—그 밖의 所들을 포함하여—가 지방통치체제상 村이 아닌 郡縣과 동일한 레벨에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말해준다.

그런데 所들은 특정한 郡縣의 영역 안에 위치하게 마련이었다. 대표적인 자기소인 大口所와 七陽所의 경우는 耽津縣의 영역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耽津縣은 仁宗代 이전은 靈岩郡의 屬縣이었고 그 이후는 長興府의 屬縣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19)</sup> 즉 靈岩郡과 長興府는 시기를 달리하여 耽津縣과 大口所·七陽所의 主縣이었다. 여기에서 자기소와 主縣 및 屬縣과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자기소의 지방통치체제상의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려시대의 主縣과 屬縣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 아는 바와 같이, 主縣과 屬縣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에는 外官이 파견되고 후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특히 지방통치의 핵심인 국가의 수취와 관련하여 양자 모두 독립된 收取單位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sup>20)</sup> 즉 屬縣도 독립된 수취단위로서, 국가에 대한 조세부담은 기본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었다.

18) 만약 제2견해의 주장처럼 所가 郡縣의 지배 아래에 있고 그에 따라 所의 貢賦도 郡縣에 부과된 貢賦의 일부로서 그에 포함되어 납부되었다면 국가에서는 이 경우에 당연히 谷州所와 樹德所가 아니라 그 所들이 속해 있던 郡縣의 貢賦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렸을 것이다.

19) 『高麗史』 57 地理志 2 長興府 耽津縣.

20) 박종진, 앞의 책, 77-80쪽; 尹京鎮, 200 『高麗 郡縣制의 構造와 運營』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17-226쪽. 한편, 金載名과 朴宗基는 屬縣이 독립적인 수취단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박종진과 尹京鎮의 자세한 비판이 있다(박종진, 앞의 책, 77-80쪽; 尹京鎮, 앞의 책, 217-226쪽).

자기소와 主縣의 관계도 屬縣과 主縣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자기소 역시 外官이 파견되지 않았지만 독립된 수취단위로서 기능하였다. 그런데 主縣에 설치된 外官은 屬縣의 상급기관으로서 조세수취와 관련하여 屬縣이 조세를 제대로 납부하도록 관리·감독하였다. 그리고 管內의 屬縣에 政令을 전달하고 勸農과 恤民을 수행하며 재정운영을 감독하는 것도 그들의 임무였다.<sup>21)</sup> 자기소도, 비록 특수한 행정단위였지만, 主縣의 관할 영역 안에 있었으므로 屬縣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리·감독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자기소가 특정한 屬縣의 영역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의 관리·감독까지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속현에도, 자기소와 마찬가지로, 外官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主縣에 설치된 外官의 관리·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자기소와 屬縣은 지방통치체제상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였다고 판단된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소는 지방통치체제상 중앙과 직결되어 있었지만 主縣에 설치된 外官의 일정한 영향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지방통치체제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말할 나위조차 없다. 자기소가 비록 특정한 郡縣의 영역 안에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관사의 관장 아래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그러한 자기소 자체내의 지배기구인 所司의 문제가 제기된다. 과연 자기소에 所司는 존재하였는가. 존재하였다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다음 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통하여 자기소의 성격이 보다 확연하게 드러나리라 믿는다.

---

21) 尹京鎮, 앞의 책, 249-259쪽.

## II. 瓷器所의 所司 問題

### 1. 所司의 存在 與否 問題

瓷器所를 비롯한 所들에 所司, 즉 所司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所에 대한 연구의 초기에는 막연히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지만, 근래에는 所司가 설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과연 실제로 있어서 所司는 설치되지 않았을까. 먼저 다음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G 州·府·郡·縣·館·驛의 田(公廩田)을 정하였다. 1000丁 이상의 州縣은 公須田 300結(中略) 鄉·部曲 1000丁 이상은 公須田 20結(中略) 大路驛은 公須田 60結 紙田 5結 長田 2結(中略) 大路館은 田 5結 中路館은 田 4結 小路館은 3結(『高麗史』 78 食貨志 32 田制 公廩田柴 成宗 2년 6월)

위 기록은 成宗 2년에 이루어진 지방 公廩田의 分給 규정이다. 여기에, 鄉·部曲·驛·館 등의 경우와는 달리, 所에 대한 分給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所司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所에는 所司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公廩田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sup>22)</sup>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는 적지 않은 의문이 있다.

所와 관련하여 위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22) 安秉佑, 2002 『高麗前期의 財政構造』 서울대학교출판부, 298쪽; 박종진, 앞의 책, 81-82쪽; 윤경진, 앞의 논문, 46-47쪽.

은 단지 成宗 2년의 지방 公廩田 분급 규정에 所에 대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이 곧 所에는 公廩田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所司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은 所와 같이 이른바 部曲制의 범주에 드는 津과 亭의 경우를 보면 쉽게 드러난다. 津과 亭에서는 長吏의 존재가 확인됨으로(사료 H 참조) 그를 중심으로 한 邑司- 津司와 亭司-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것들에 대한 公廩田의 분급 규정 역시 위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경우로 미루어 자기소에도 所司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해전이 분급되지 않았거나, 공해전이 분급되었으나 그 내역이 기록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료 G의 鄉· 部曲이 말 그대로 鄉과 部曲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鄉· 所· 部曲을 아우르는 뜻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鄉· 部曲이 그러한 의미로 쓰인 예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sup>23)</sup> 실제에 있어서 어느 경우였는지는 갑자기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위 기록을 토대로 所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에 큰 무리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所司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근거가 다음 기록이다.

H① 崔士威가 건의하기를, “鄉吏들의 칭호가 混雜하니 이제부터는 모든 州· 府· 郡· 縣의 鄉吏는 (그대로) 戶長으로 부르고 鄉· 部曲· 津· 驛의 鄉吏는 단지 長으로 부르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이에 따랐다(『高麗

23) 다음의 예들이 참조된다. ① 鄉· 部曲· 津· 驛과 兩界의 州· 鎭에 편입된 사람들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한다(『高麗史』 86 刑法志 2 禁令). ② 五逆· 五賤· 不忠· 不孝한 사람과 鄉· 部曲· 樂工· 雜類의 자손은 과거를 보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高麗史』 73 選舉志 1 科目 1 靖宗 11년 4월 判).

史』 75 選舉志 29 鄉職 顯宗 13년 4월)

- ② (崔士威가) 또 건의하기를, “여러 州縣의 長吏의 칭호가 混雜하니 이제부터는 郡·縣 이상의 長吏는 戶長으로 부르고, 鄉·部曲·津·亭·驛의 長吏는 단지 長으로 부르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이에 따랐다.(『高麗史』 94 列傳 7 崔士威)

사료 H에 따르면, 현종 13년에 長吏들의 호칭을 변경하였는데, 州·府·郡·縣의 長吏와 鄉·部曲 등의 長吏의 호칭을 달리하여 차별화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所의 경우는 언급이 없다. 이를 두고 所司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所에는 長吏가 없었고 당연히 所司도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sup>24)</sup> 그러나 이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우선, 사료 G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館의 경우 公廩田을 지급한 것으로 미루어 畝司가 설치되고 의당 그 구성원인 長吏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것 역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사료 H-①과 H-②는 동일한 사실을 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H-②에는 언급되어 있는 亭이 H-①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료 H에서 部曲制 영역 가운데 鄉·部曲·津·驛 등의 경우만을 언급한 것은 그곳에만 長吏가 있어서였다기보다는 그것들이 그러한 성격의 행정구역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위 기록에 所의 경우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곧 그곳에는 長吏가 없었고 아울러 所司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sup>25)</sup>

24) 윤경진, 앞의 논문, 46쪽.

25) 한편, 윤경진은 앞서 인용한 사료 E①에서 梨旨銀所가 縣으로 승격하면서 縣司·長吏를 둔 것을 모두 처음과 같이 하였다고 한 대목을 두고, 梨旨銀所가 所에서 縣이 되면서 비로소 縣司와 長吏를 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그 대목이 梨旨銀所가 所로 있었을 때는 所司와 長吏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앞의 논문, 46-47쪽). 그러나 이것은 윤경

오히려 다음 기록들은 所에 鄉吏들이 존재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H① 中贊 洪子藩이 백성을 편하게 할 일들(便民事)을 조목조목 올렸다. (中略) 一. 諸州縣 및 鄉·所·部曲에서 人吏가 한 戶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外吏 가운데 세력에 의지하여 役을 피한 사람은 모두 歸鄉시키고 丁吏도 역시 數를 감하여 돌려보내십시오. (『高麗史』 84 刑法 1 職制 忠烈王 22년 5월)
- ② 大司憲 趙浚 등이 상서하여 말하였다. (中略) 一. 外役田. 留守·州·府·郡·縣의 吏津·驛·鄉·所·部曲의 吏院·館의 直이 받는 口分田으로, 前例에 따라 折給하되 모두 그들이 죽을 때까지 지급한다. (『高麗史』 78 食貨 1 田制 祿科田 禡王 14년 7월)
- ③ 지금 생각건대, 新羅가 州郡을 建置할 때 그 田丁과 戶口가 縣으로 삼기에 부족한 곳은 혹은 鄉을 두고 혹은 部曲을 두어 소재하고 있는 邑에 속하게 하였다. 高麗 때 또 所라고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金所·銀所·銅所·鐵所·絲所·紙所·瓦所·炭所·鹽所·墨所·藿所·瓷器所·魚梁所·薑所의 구별이 있어 각기 그 물건을 바쳤다. 또한 處라고 칭하는 것과 莊이라고 칭하는 것이 있어서 각 宮殿·寺院 및 內莊宅에 나누어 예속되어 그 稅를 바쳤다. 위의 諸所에는 모두 土姓吏民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3 京畿道 驪州牧 古跡 登神莊)

사료 H①에서 洪子藩은 당시 所 등에 鄉吏가 한 戶도 없는 곳이 많다고 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곳에 鄉吏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말이다. 그리고 趙浚은 所 등의 鄉吏들에게 外役田을 지급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것을 전례에 따라 折給하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부터 그들에게 外役田이 지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사료 H③에서 所를 포함한 雜所에 모

---

진 자신도 언급한 바와 같이(앞의 논문, 47쪽), 所司에서 縣司로 승격하고 아울러 長吏의 수도 縣에 걸맞게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므로, 所에 所司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보기 힘들다.

두 土姓吏民이 있었다고 한 것도 所에 향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또 다른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기록은 모두 고려 후기 이후의 것들이지만, 고려 시대에 자기소를 비롯한 所들에 향리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자기소에 鄉吏가 존재했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음 銘文이다.

字 行	1	2	3	4	5	6	7	8	9
1	辛	丑	五	月	十	日	造		
2	爲	大	口	前	戶	正	徐	敢	夫
3	淸	沙	硯	壹	隻	黃	河	寺	



이 명문은 1181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靑磁象嵌菊牡丹文「辛丑」銘벼루(湖巖美術館 所藏)－앞으로 「辛丑」銘벼루로 略稱한다－의 뒷면에 새겨져 있다(그림 1·2). 그 내용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辛丑年 5월 10일 大口所의 前戶正인 徐敢夫를 위하여 맑은 청자벼루 한 개를 만들었다. 黃河寺

즉 黃河寺라는 절에서 徐敢夫라는 사람을 위하여 청자벼루를 만들었다는 것이 명문의 내용인데,<sup>26)</sup>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徐敢夫가 고려시대를 통틀어 가장 대표적인 자기소인 大口所의 戶正을 역임하였다는 점이다.<sup>27)</sup> 黃河寺가 왜 大口所의 前戶正인

26) 이 명문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李喜寬, 200 『高麗靑磁史上的 康津窯와 扶安窯－湖巖美術館 所藏 靑磁象嵌菊牡丹文「辛丑」銘벼루 銘文의 檢討－』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郷』 康津靑磁資料博物館을 참조하라.

27) 윤경진은 명문에 보이는 徐敢夫가 大口所가 아니라 大丘縣의 前戶正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가 근거로 든 것은 첫째, 명문에 보이는 '大口'는 '大丘'로 관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둘째, '大口'로 관독하더라도 '大丘'를 '大口'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셋째, 『世宗實錄』 地理志에 따른 경우, 大口所에는 徐라는 土姓이 없는 반면, 大丘縣에는 徐氏가 土姓이었다는 점, 넷째, 문제의 청자벼루는 청자가 생산되지 않던 지역 사람이 주문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 등이다(앞의 논문, 47-48쪽). 그러나 그의 주장에는 적지 않은 의문이 있다. 첫째, 명문의 관독과 관련하여 문제의 글자의 字體와 劃 그리고 筆順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大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둘째, 大丘를 '大口'로 기록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는 있다. 문제는 그 경우 大丘縣이 大口所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所가 縣에 비해 사회적으로 賤視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大丘를 '大口'로 기록했을까. 이것은 커다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셋째, 徐氏가 大丘縣에는 土姓으로 되어 있고, 大口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유력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단 그것은 『世宗實錄』 地理志에 고려의 姓氏 상황이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前提로 할 때 그러하다. 그러나 당시에 적어도 所를 비롯한 部曲制 영역의 姓氏의 경우 그것을 제대로 詳考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열에 하나·둘(纔十之一二)에 불과한 실정이었다'(서성호, 1999 『高麗 수공업所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韓國史論』 41·42, 서울大 國史學科, 266-269쪽 참조) 실제에 있어서 徐氏가 大口所의 土姓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이 점 역시 그의 견해를 실제적으로 뒷받침해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 그는 徐敢夫를 청자벼루를 주문제작한 사람으로 파악했는데, 이는 오해이다. 명문의 내용에 충실하는 한, 그것을 제작한 주체는 黃河寺였고, 徐敢夫는 그것을 贈與 받은 사람이었다(李喜寬,

徐敢夫를 위하여 청자벼루를 만들었는지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겨를이 없지만,<sup>28)</sup> 아무튼 그의 존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소—그 밖의 所들을 포함하여—에 鄉吏가 존재했는가의 與否 문제는 이제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기소에 鄉吏가 있었다면, 그곳에 그들의 지배기구인 所司가 설치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2. 所司의 構造와 所吏—특히 大口所의 경우—

우리는 앞 절에서 「辛丑」銘벼루와 거기에 새겨 있는 명문을 통하여 이 벼루가 黃河寺에서 각별히 大口所의 戶正을 역임한 徐敢夫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자기소 所司의 구조와 所司의 구성원인 所吏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논의의 초점은 자연히 徐敢夫가 복무했던 大口所에 맞추어지게 될 것이다.

所吏들은 자기소의 구성원 가운데 최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자기소에는 外官이 과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所司를 구성하고 자기소의 행정 일반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 所司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일반 郡縣의 鄉吏職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려시대의 鄉吏職制는 成宗 2년(983)에 비로소 정비되었다. 그것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29)</sup>

200 앞의 논문, 64-67쪽) 이러한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가 윤경진의 주장에 따를 수 없음은 물론이다.

28) 「辛丑」銘벼루를 매개로 한 黃河寺와 徐敢夫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李喜寬, 200 앞의 논문, 64-71쪽을 참조하라.

29) 李基白, 1974 「新羅私兵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潮閣, 266쪽.

<표 1> 成宗 2년에 정비된 鄉吏職制



※ [ ] 안은 상상하여 넣은 것

즉 위로는 鄉吏의 首長인 戶長과 副戶長이 있었고, 그 아래에 일반 행정을 관장했을 戶正·副戶正·史로 이루어진 司戶 계열과, 州縣軍과 관련된 軍役 일반에 관한 일을 맡았을 兵正·副兵正·兵史로 이루어진 司兵 계열과, 租稅와 貢賦 등에 관한 일을 처리했을 司倉 계열이 있었다. 이러한 구성은 후에 약간의 변화를 겪게 되지만, 그 핵심 골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기소의 所吏로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大口所의 戶正뿐이지만, 우리는 이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 하나는 大口所에 戶正을 포함한 司戶 계열의 所吏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곳에 戶長層인 戶長·副戶長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戶正이 鄉吏職에서 서열상 중간적 위치에 있었다는 점으로부터 유추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밖에 司兵이나 司倉 등과 같은 계열의 所吏들도 있었는지는 의연히 분명하지가 않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하여 앞서 인용한 사료 H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顯宗 13년(1022) 4월에 崔士威의 건의로 일반 郡縣의 長吏와 部曲·津·亭·驛 등과 같은 部曲制 영역의 長吏를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조치가 일반 郡縣의 鄉吏들과 이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賤視된 部曲·津·亭·驛 등과 같은 部曲制 영역의 鄉吏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이 조치로 이제 部曲·津·亭·驛의 長吏들은 각각 部曲長·津長·亭長·驛長 등으로

불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아래에 있던 副戶長들도 각각 副部曲長·副津長·副亭長·副驛長 등으로 불리게 되었을 것이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部曲制 영역에 속해있던 大口所의 戶長과 副戶長도 여기에서 예외였을 까닭이 없다. 즉 이들도 각각 所長과 副所長으로 불리게 되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大口所 戶正의 존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조치를 취하면서 戶正과 副戶正 등의 명칭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大口所의 본래의 所吏職制가 단지 戶長·副戶長과 司戶 계열의 所吏만으로 구성된, 즉 戶長-副戶長-戶正-副戶正-史의 단일 계통이었다면, 사료 H의 조치를 취하면서 戶正과 副戶正도 각각 所正과 副所正으로 그 명칭을 바꾸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조치의 목적으로 미루어 볼 때, 戶正과 副戶正의 경우만 일반 군현의 鄉吏들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게 하였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들은 명칭변경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이는 본래 大口所의 所吏職制가 戶長-副戶長-戶正-副戶正-史의 단일 계통이 아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사실 大口所의 所司에 戶長·副戶長과 司戶 계열의 所吏뿐만 아니라 司兵이나 司倉 등과 같은 또 다른 계열의 所吏들까지도 있었다면, 戶正과 副戶正의 명칭을 각각 所正과 副所正으로 바꾸는 것은 所吏의 여러 계열과 명칭의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한 것임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戶正과 副戶正의 명칭을 所正과 副所正으로 바꿀 경우 그 명칭들이 그들의 계열-司戶 계열-과 견주어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들이 司戶 계열인 이상 다른 계열의 所吏들-예컨대 司兵 계열이나 司倉 계열의 所吏들-과의 구별을 위해 「戶正」과 「副戶正」과 같이 그들이 司戶 계열의 所吏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職名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사료 H에 보

이는 鄉吏 職名의 변경조치에서 각 所의 所吏들 가운데 首長級인 戶長과 副戶長의 職名만 각각 所長과 副所長으로 바꾸고, 그 밑의 戶正과 副戶正을 비롯한 中下級 所吏들의 경우는 그대로 둔 것은 바로 그러한 점을 고려한 결과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에 별 무리가 없다면, 결국 「辛丑」銘벼루가 제작될 당시 大口所의 所司는 所長·副所長과, 司戶 계열을 포함한 여러 계열의 所吏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大口所의 所司에 司戶 계열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계열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우선 租稅와 貢賦 등에 관한 일을 처리했을 司倉 계열의 所吏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所에서도 국가에 조세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며<sup>30)</sup> 특히 국가에 청자를 貢納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所의 주민들은 軍役-州縣軍으로서의 軍役-도 짊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31)</sup> 그러므로 大口所에도 그러한 軍役に 관한 일을 처리하는 司兵 계열의 所吏들도 편제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밖에 成宗 2년(983)에 鄉吏職制가 정비된 후에 일반 郡縣에 公須·食祿·客舍·藥店·司獄 등의 계열이 확충되었는데, 이에 따라 大口所의 경우도 그와 같은 길을 밟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설사 그러한 계열이 편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司戶나 司倉 및 司兵과 같은 핵심 계열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요컨대 大口所 所司의 핵심적인 구성원은 所長·副所長과 司戶·司倉·司兵 계열의 所吏들이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이는 자기소의 所司의 구조가 일반 郡縣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0) 朴宗基, 1990 앞의 책, 159-161쪽 ; 이정희, 2000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 國學資料院, 146-149쪽.

31) 朴宗基, 1990 앞의 책, 160-161쪽.

그러면 大口所의 所司에서 그러한 職任을 맡고 있던 所吏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 大口所의 所吏를 역임한 사람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徐敢夫가 유일한데, 우리는 그가 徐氏라는 점에 각별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世宗實錄』 地理志는 徐氏와 大口所의 관계에 관한 또 다른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J 大口所는 續姓이 하나이니, 徐이다. 『世宗實錄』 151 地理志 全羅道 羅州牧 康津縣

위 기록에 따르면 大口所의 경우 續姓이 하나였는데, 그것이 바로 徐氏였다. 續姓은 土姓·亡姓 등과 함께 『世宗實錄』 地理志에 보이는 여러 종류의 姓 가운데 하나이다. 사료 J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姓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世宗實錄』 地理志에 의하면, 土姓은 前代 이래의 「古籍」과 『世宗實錄』 地理志의 편찬 당시 각 道에서 올린 문서인 「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姓氏를 지칭하며, 亡姓은 「古籍」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지금은 없어진 姓氏를 가리킨다.<sup>32)</sup> 이에 반해 續姓은 「古籍」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각 道의 「關」에 의거하여 續錄한 姓氏를 의미한다.<sup>33)</sup> 말하자면 土姓·亡姓은 「古籍」이 작성되기 이전부터 있어온 데 반해서, 續姓은 『世宗實錄』 地理志의 편찬 당시 각 道에서 올린 「關」에 의거하여 비로소 續錄한 姓氏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古籍」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체로 고려 초기부터 후기까지의 姓氏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典籍이나 문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만을 통하여 보면, 혹 大口所의 徐氏가 고려 후기의 어느 때부터 大口所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32) 『世宗實錄』 151 地理志 京畿道 廣州牧 姓氏.

33) 『世宗實錄』 151 地理志 京畿道 廣州牧 楊根郡 姓氏.

모른다. 그러나 이미 12세기 후반경에 徐敢夫가 大口所에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실제에 있어서 그러했을 가능성은 배제해도 좋다. 徐氏는 大口所의 土姓이었던 셈이다.

徐氏 이외에는 大口所의 所吏를 역임한 姓氏를 확인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世宗實錄』 地理志를 편찬할 당시 각 道에서 올린 「關」에는 大口所의 姓氏로 徐氏만이 파악되어 있었다. 이는 이 당시까지도 徐氏가 大口所 지역의 지배적인 姓氏로서 자리잡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면 大口所의 所吏를 역임한 사람들의 대다수도 徐氏였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한다. 요컨대 徐氏가 줄곧 大口所의 所司를 장악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다른 자기소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大口所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각 자기소의 유력한 姓氏集團이 중심이 되어 所司를 운영해나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 III. 瓷器所의 展開

大口所와 七陽所 이외에 자기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所들로 高敞縣 陶成所와 德巖所, 그리고 高陽郡 巾子山所가 있다. 陶成所와 德巖所는 각각 高敞郡 龍溪里窯와 盤巖里窯에,<sup>34)</sup> 巾子山所는 高陽市 元興洞窯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sup>35)</sup> 이름은 알 수 없지만, 高興郡 雲岱

34) 李喜寬, 2002 『韓國 初期靑磁生産體制의 成立과 展開』 『대의문물고류연구』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59쪽). 한편, 徐聖鎬는 龍溪里窯와 盤巖里窯가 하나의 자기소 즉 陶成所로 편제된 것으로 파악하였다(1997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57쪽). 그러나 『世宗實錄』 地理志 및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과 龍溪里窯와 盤巖里窯의 위치를 건주어보면, 전자는 陶成所에, 후자는 德巖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里窯와 海南郡 新德里窯도 자기소체제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sup>36)</sup> 최근에는 扶安郡 鎭西里窯도 자기소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출되었는데, 좀더 검토의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sup>37)</sup> 그렇지만 이들 모두가 실제에 있어서 자기소였다고 하더라도 그 예는 8개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窯址의 발굴과 사료의 검토를 통하여 좀더 많은 수의 자기소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을 통하여 그 전개과정을 더듬어볼 수밖에 없다.

자기소의 전개와 관련하여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은 이窯들이 언제 자기소로 편제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의 연구 수준에서 그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힘든 실정이지만, 所의 성립시기나 위에

35) 金德子, 1991 「京畿道內 鄉·部曲·所 村落의 歷史地理的 研究—歷史的 變遷과 地理的 立地 特性 및 機能을 중심으로—」, 『地理教育論集』 26, 서울大學校 地理教育科, 34-37쪽, 朴宗基, 2001 「京畿 北部地域 中世 郡縣 治所와 特殊村落 變化研究」, 『北岳史論』 8, 北岳史學會, 147-148쪽.

36) 李喜寬, 2002 앞의 논문, 55-56쪽 참조. 한편, 徐聖鎬는 雲岱里窯의 경우 高伊部曲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앞의 책, 68쪽). 『高麗史』 57 地理志 2 全羅道 寶城郡條에 따르면, 高興縣은 高伊部曲이 승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雲岱里窯가 있는 오늘날의 豆原面은 당시 高興縣이 아니라 荳原縣의 영역에 속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高麗史』 57 地理志 2 全羅道 寶城郡 荳原縣. 그러므로 雲岱里窯가 高伊部曲에 속해 있었다고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37) 金炫廷, 2002 「高麗時代 靑磁象嵌銘文瓦片을 통해 본 扶安窯」, 西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8-28쪽. 즉 金炫廷은 高敞郡 禪雲寺 東佛庵에서 출토된 「…利所造」라는 명문이 있는 청자와 편에 주목하여, 그것이 …利所에서 제작하였으며, 그 製作地를 出土地에 인접해 있는 扶安郡 鎭西里窯로 추정하였다. 매우 흥미로운 견해지만, 다음과 같은 약간의 의문이 남는다. 첫째, 「…利所造」를 「…利」가 만든 것이다라는 의미로 새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利」는 청자기와의 製作者가 되는 셈이다. 둘째, 金炫廷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의 「…利所」를 人名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는 「…利所」가 청자기와의 製作者가 되는 셈이다. 고려시대의 청자에는 그것의 제작과 관련된 많은 銘文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製作者를 표시한 것이고, 그 製作地를 명기한 것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더욱이 「…利所」를 자기소로 파악할 경우, 국가에 대한 청자의 공납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던 자기소에서 일반 사찰에 쓰일 청자기와를 제작하면서 그 製作地를 명기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인데, 이것도 썩 자연스럽지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문점들이 곧 金炫廷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鎭西里窯가 자기소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서 언급한 窯들의 開窯時期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開窯한 鎭西里窯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10세기 후반의 어느 때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sup>38)</sup>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에 자기소로 편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窯들이 元興洞窯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라도 지역에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후삼국시대에 후백제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背逆'의 땅으로 간주되었다. 아마도 이 窯들은 이러한 이유로 자기소로 편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sup>39)</sup> 이들과 달리 후삼국시대부터 고려의 영역 안에 있던 元興洞窯는 國命의 거역과 같이 所로 편제될만한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자기소로 편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소의 예로 든 여덟 개의 窯 가운데 가장 늦게 開窯한 것으로 여겨지는 鎭西里窯에서는 초기청자의 標識的인 유물인 해무리굽碗이 출토되지 않는다(그림 3). 이 점을 중시할 경우, 鎭西里窯는 초기청자시대가 막을 내리는 11세기 말기나 12세기 초기 이후에 開窯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40)</sup> 그러므로 이 窯가 자기소로 편제되었다면 당연히 그 이후가 될 것이다.

38) 필자는 舊稿에서 자기소를 포함한 所의 성립 시기를 고려 초기 지방통치체제의 정비와의 관련 속에서 940-970년대 전반기로 추정하였다(2002 앞의 논문, 55쪽).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窯들이 어느 정도 시간적 격차를 두고 자기소로 편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窯들이 실제로 자기소로 편제된 시기는 10세기 후반경의 어느 때로 파악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39) 李喜寬, 2002 앞의 논문, 54-55쪽.

40) 초기청자의 소멸 시기에 대해서는 尹龍二, 1993 「高麗靑瓷의 起源과 發展」 『韓國陶瓷史研究』 文藝出版社, 138쪽; 張南原, 2003 「高麗中期 靑瓷의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202쪽; 李鍾玟, 2002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 弘益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81쪽; 片山まび, 2003 「北九州地域에서 出土된 高麗靑磁에 대하여—初期資料에 관한 編年問題를 중심으로—」 『對外交渉으로 본 高麗靑磁』 강진청자자료박물관, 48-51쪽; 李喜寬, 2004 「高敞郡 龍溪里窯와 “太平壬戌”銘 瓦片 및 塼築窯 問題」 『美術史研究』 244, 韓國美術史學會, 101-103쪽을 참조하라.

한편,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자기소인 大口所가 있었던 康津郡 龍雲里·桂栗里·沙堂里·水洞里에는 크고 작은 180여 곳의 窯址가 산재해 있다. 여기에는 남서부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初期靑磁 窯 가운데 하나인 龍雲里 63號窯(그림 4), 처음으로 翡色靑磁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龍雲里 9號窯, 전성기의 翡色靑磁를 생산한 대표적인 窯인 沙堂里 7號窯(그림 5), 고려 말기의 청자 양상을 잘 보여주는 沙堂里 10號窯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 窯址들의 퇴적층을 살펴보면, 大口所에서 고려시대 전 시기에 걸쳐 간단없이 최고 수준의 청자를 생산·공납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인접해 있는 三興里에도, 龍雲里·桂栗里·沙堂里·水洞里의 경우보다는 매우 적지만, 그러한 翡色靑磁片들이 출토되는 여러 곳의 窯址가 산재해 있다(그림 6). 이 점으로 미루어 보면, 七陽所에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한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자기소들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巾子山所(元興洞窯)는, 그 원인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所로 편제된 직후인 10세기 말기에서 11세기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청자의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sup>41)</sup>

龍溪里窯址(陶成所)와 盤巖里窯址(德巖所)의 경우는 퇴적층은 대규모이지만, 그곳에서 출토되는 청자의 품질은 康津郡 窯址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전형적인 翡色靑磁가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그리고 출토되는 청자편들도 대부분 해무리굽碗을 표식적 유물로 하는 초기청자시대의 그것들에 국한된다(그림 7·8).<sup>42)</sup> 이 점으로 미루어 陶成所와 德巖所는 청자를

41) 李喜寬·崔健, 2001 「高麗初期 靑磁生産體制의 變動과 그 背景」, 『美術史學研究』 232, 韓國美術史學會, 39쪽.

42) 鄭明鎬·尹龍二, 1985 『高敞雅山담水沒地區發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韓國電力公社 靈光原子力建設事業所, 88-118쪽.

생산한 기간도 짧아서, 대체로 초기청자시대가 종언을 고하는 11세기 말기나 늦어도 12세기 초기에는 청자생산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개의 窯址가 조사된 雲垆里窯址와 50여 곳의 窯址가 확인된 新德里窯址의 경우도 龍溪里窯址와 盤巖里窯址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의 경우도 청자의 품질이 康津郡 窯址에 비해 떨어지며, 출토되는 청자의 기형과 문양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운영기간도 초기청자시대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그림 9·10).<sup>43)</sup>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고려 초기에 자기소로 편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곱 곳 가운데 大口所와 七陽所를 제외한 다섯 곳이 10세기 말기-11세기 초기(元興洞窯) 또는 11세기 말기-12세기 초기(龍溪里窯·盤巖里窯·雲垆里窯·新德里窯)에 청자의 생산을 중단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龍溪里窯를 비롯한 네 곳의 窯에서 거의 동일한 시기에 청자의 제작이 중단된 것이 흥미롭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사료 A의 내용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리라 믿는다.

이 사료에 따르면, 자기소에 대한 別貢의 징수가 지나쳐서 ‘匠人’들이 도피하자,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別貢과 常貢의 額數를 다시 정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조치를 취한 것이 睿宗 3년(1108)이었으니까, 자기소로 추정되는 네 곳의 窯들이 청자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이 점을 중시하면, 이 窯들이 소멸의 길을 걷게 된 중요한 원인은 別貢의 과도한 징수와 그에 따른 자기소 ‘匠人’들의 도피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에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소의 別貢과 常貢의 액수를

43) 강대규, 1991 『고흥 운대리』 국립광주박물관, 15-30쪽 및 75-76쪽; 金誠龜·具一會·朴海勳, 2000 『海南 新德里 靑磁窯址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14-47쪽; 崔盛洛·韓盛旭·宋泰甲, 2002 『海南의 靑磁窯址』 海南郡·木浦大學校博物館, 36-66쪽.

다시 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窯들에서 결국 청자의 생산이 중단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국가에서는 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였지만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결국 이窯들에서의 청자의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판단된다.<sup>44)</sup>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국가에서는 그러한 결정이 공납 청자의 부족을 야기하리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은 이 시기에 고려의 자기소 운용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때를 전후한 시기의 大口所와 七陽所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자기소들이 위치하였던 康津郡의 大口面과 七良面에는 40여 곳의 初期靑磁窯址가 남아 있다.<sup>45)</sup> 흥미로운 것은 초기청자시대의 終焉과 때를 같이 하여 다수의 자기소에서 청자의 생산이 중단된 것과 정 반대로 이 곳에서는 청자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 지역에서 이 시기에 운영된 窯址가 130여 곳에 이르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sup>46)</sup> 그런데 이 窯址들의 대부분은 大口所의 지

44) 이窯들에서 청자의 생산이 중단된 것이 국가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 그窯들에서 匠人들의 도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국가의 결정과 관계없이 청자의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야기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자기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가에 대한 청자의 貢納이었다는 점을 중시하면, 실제로 있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사실 그러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자기소들에서 지속적으로 청자를 생산하게 하고자 하였다면, 徙民 등의 방법을 써서라도 그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했을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그 자기소들에서 청자의 생산이 중단된 데에는 匠人들의 도피 현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중단을 결정한 것은 국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는다.

45) 崔健, 1998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미술사연구』 12, 미술사연구회, 10-11쪽 참조. 단 崔健은 康津窯 초기청자의 소멸시기를 10세기 후기로 파악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 시기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세기 말기나 늦으면 12세기 초기로 이해하고 있다.

역에 위치하고 있다. 七陽所 지역에서는 극소수의 窯址만이 확인될 뿐이다.<sup>47)</sup> 그렇다면 사료 A의 조치를 취한 직후인 12세기 초기에 국가는 陶成所와 德巖所 등의 자기소에서 청자생산을 중단하고 최고 품질의 청자를 생산하던 大口所에서의 청자 생산을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에 국가의 자기소 운용 정책이 大口所 중심 체제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三興里窯와 鎮西里窯의 전개과정이다. 최근 七陽所가 있었던 三興里窯址의 발굴이 이루어졌다.<sup>48)</sup> 이 발굴에서는 「尙藥局」으로 추정되는 명문이 새겨진 靑磁盒片이 출토되었는데,<sup>49)</sup> 이 점으로 미루어 이곳이 자기소였음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三興里窯의 下限을 알려줄 수 있는 紀年銘 자료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발굴보고자는 이窯가 초기청자시대에 開窯하여 대체로 12세기 중엽경까지 청자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50)</sup> 이 견해에 따를 경우 七陽所도 자기소 운용 정책이 대구소 중심 체제로 전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청자의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鎮西里窯의 경우도 이 때로부터 그다지 벗어나지 않은 시기에 청자의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sup>51)</sup> 이는 곧 고려의 자기소

46) 崔健, 앞의 논문, 11-13쪽. 이 시기는 초기청자시대가 종언을 고한 후부터 상감청자가 절정기에 이르기 이전까지를 의미한다. 崔健은 이 시기를 11세기에 접어들어 후 11세기 후기에 이른 시기로 파악하고 있으나, 필자는 이 시기가 대체로 12세기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다. 한편, 崔健은 七良面 三興里에는 이 시기의 요지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최근의 발굴 결과 이 시기에 운영된 소수의 窯址가 확인되었다(金建洙 外, 2004 『康津 三興里窯址』 I, (再)湖南文化財研究院·農業基盤公社 康津·莞島支社; 신상효 外, 2004 『康津 三興里窯址』 II, 國立光州博物館·湖南文化財研究院·農業基盤公社 康津·莞島支社).

47) 金建洙 外, 앞의 책; 신상효 外, 앞의 책.

48) 앞의 註 47)과 같음.

49) 신상효 外, 앞의 책, 80쪽.

50) 신상효 外, 앞의 책, 118쪽.

51) 林英鎬, 1998 「12세기 高麗靑瓷의 特徵에 대한 一研究—扶安 鎮西里 18·20號 靑瓷窯址를

운용 체제가 더욱 集中化되어 결국 大口所 단일 체제로 귀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청자의 생산과 공납이 중단된 자기소들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궁금하다. 이 의문을 푸는 데 있어서 그 자기소들이 사실상 자기소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체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들은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所로서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적어도 자기소의 경우 청자의 생산 및 공납이 所體制 유지의 전제 조건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sup>52)</sup> 이 점으로부터, 자기소가 아닌 지역에서 청자를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所로 편제된 만한 이유-예컨대 國命의 거역-가 없을 경우 그곳이 자기소로 편제되었을 것이라고 불이유가 없다는 또 다른 類推도 가능하다.

청자의 생산과 공납이 중단된 자기소들은 일반 郡縣과 같이 국가에 三稅를 부담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所로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군현에 비해 사회적으로 차별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것들은 鄕과 部曲이다. 청자의 공납이 중단된 자기소는 국가에 대한 부담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측면에서 鄕 및 部曲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다음 기록

中心으로-」圓光大學校 碩士學位論文, 47-49쪽; 尹龍二·金善基·林英鎬, 200 『扶安 鎮西里 20號 靑瓷窯址』, 『各地 試·發掘調查報告書』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14-115쪽; 尹龍二·金善基·林英鎬, 2001 『扶安 鎮西里 靑瓷窯址 第18號窯址發掘』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裡里地方國土管理廳, 105-109쪽.

52) 이 점은 자기소 이외의 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즉 다양한 종류의 所들에서 국가에 대한 貢納品の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所들은 해체-郡縣으로 승격이나 直村化-되지 않고 유지되었다고 믿어진다. 다시 말하면, 수취체제의 측면에서 所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적 성격, 즉 部曲制 영역으로서 일반 郡縣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차별되는 처지에는 변함이 없었던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所體制의 성립 이후 所의 양 측면, 즉 전문적으로 국가에 대한 貢納品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部曲制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측면 가운데 오히려 후자의 성격이 더욱 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所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를 요망하는 대목이다.

이 매우 흥미롭다.

- K① 所가 둘이니, 陶成과 德巖이다. 『世宗實錄』 151 地理志 全羅道 羅州牧 高敞縣  
② 陶成部曲 縣의 북쪽 25리에 있다. 德巖所 縣의 북쪽 29리에 있다. 巖은 옛  
날에는 密로 썼다. 『新增東國輿地勝覽』 36 全羅道 高敞縣 古跡

사료 K-①의 陶成所와 사료 K-②의 陶成部曲은 일견하여 동일한 행정구역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곳이 『世宗實錄』 地理志에는 所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部曲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단지 『世宗實錄』 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撰者 가운데 어느 한쪽의 錯誤로 돌리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이 경우 이외에도 조선 초기의 地理書에 所와 部曲뿐만 아니라 所와 鄉 그리고 鄉과 部曲이 서로 뒤바뀐 例가 종종 발견되는 반면, 동일한 部曲制의 영역에 속한 莊과 處의 경우는 그러한 例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sup>53)</sup> 실제에 있어서 당시 陶成所는 陶成部曲으로 종종 혼동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陶成所가 자기소로서 실제적인 기능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혼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곳은 국가에 청자를 생산·공납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부담으로 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部曲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sup>54)</sup> 그

53) 朴宗基, 1990 앞의 책, 149쪽.

54) 한편, 朴宗基는 所와 鄉·部曲의 주민들이 국가에 대한 특정한 役負擔者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존재로 파악되었다고 주장하였다(1990 앞의 책, 147-150쪽). 所가 국가에 대해서 특정한 役-특정한 물품의 생산·공납하는 役-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지만, 과연 鄉과 部曲도 특정한 役을 지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朴宗基는 鄉과 部曲이 특정한 役으로서 屯田 등과 같은 국가 공유지의 경작에 동원되고 때에 따라 所가 부담한 役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국가 공유지의 경작에 鄉·部曲人만이 동원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屯田의 경우는 戍兵과 閑民들을 동원하여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高麗史』 82 食貨志 2 禡王 원년 2월). 한편, 그는 鄉·部曲人들이 所의 役을 대신했다는 점에 대한

러나 청자의 생산과 공납이 중단된 陶成所는 국가에 대한 부담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部曲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자는 모두 일반 郡縣에 비해 사회적으로 차별된 部曲制의 영역에 속한 존재로서 국가에 三稅를 부담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양자의 유사성으로부터 그러한 地名의 혼동이 비롯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sup>55)</sup> 아울러 고려 후기에 접어들어 所가 흔히 鄉·部曲과 連稱된 것도 그러한 所의 성격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자기소로 출발한 자기소의 운용이 大口所 중심 체제로 전환되면서 大口所는 고려 청자의 메카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이 시기에 大田市 舊完洞窯나 陰城郡 筮里窯 등의 靑磁窯가 운영되었지만,<sup>56)</sup>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청자의 양상의 측면에서 大口所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청자 품질의 측면에서 大口所와 어깨를

근거로 철·소금·도자기 등 所에서 전담하여 공납하던 물품을 생산한 지역에 鄉과 部曲이 존재하였던 경우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물품들은 所나 鄉·部曲이 없던 一般郡縣에서도 생산·貢納되었음이 분명하다(徐聖鎬 앞의 책, 74-82쪽). 이 점을 중시하면, 鄉·部曲에서 所에서 생산한 물품을 생산·공납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鄉·部曲의 특수한 役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필자는 鄉·部曲이 所와 같은 특수한 役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朴宗基의 견해에 동의할 수가 없다. 단지 '田丁과 戶口가 縣으로 삼기에 부족한 곳은 혹은 鄉을 두고 혹은 部曲을 두어 소재하고 있는 邑에 속하게 하였다'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사료 1-3)을 중시하면, 鄉·部曲은 사회적으로는 所와 마찬가지로 일반 郡縣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시되었지만, 적어도 수취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郡縣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三稅를 무는, 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존재였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55)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이 所가 鄉·部曲과 혼동된 것을 두고 鄉과 部曲이 본래 所와 같이 국가에 특수생산물을 생산·공급하는 등 특정한 役負擔者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존재로 파악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하였다(김건상, 1993 『조선의 부곡제에 관한 연구』 과학원 출판사, 5-7쪽; 朴宗基, 1990 앞의 책, 148-150쪽).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所와 鄉·部曲은 본래는 국가에 대한 役 부담의 측면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존재였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견해에 찬동할 수가 없다.

56) 崔健·李鍾玟·張起熏, 2001 『大田 舊完洞 窯址』 海刺陶磁美術館·大田廣域市; 姜敬淑·朴連緒·朴敬子, 2002 『陰城 筮里 청자가마터』 忠北大學校博物館·(주)동부건설·(주)원림개발.

나란히 한 扶安郡 柳川里窯의 경우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었다.<sup>57)</sup>

그렇지만 이窯들은 자기소로 편제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窯들이 자기소였음을 입증할 만한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으며, 그窯址에서도 그러한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자의 생산이 國命의 거역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자기소의 편제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앞서의 지적이나, 국가에서 大口所 중심의 자기소 운용체제를 추구하였다는 점을 떠올리면,<sup>58)</sup>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특히 柳川里窯의 경우 높은 품질의 청자를 생산하였다는 점으로부터 막연히 그곳이 자기소였을 것으로 추정된 것은 바로 그러한 청자의 생산과 자기소 편제 사이의 관계와 당시 국가의 자기소 운용정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이러한 大口所 중심의 자기소 운용 체제의 기본적인 골격은 고려 말기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 맺음말－大口所 中心 瓷器所體制에 대한 약간의 斷想－

이제까지의 검토를 통하여, 瓷器所는 일반 郡縣이 아닌 중앙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있었고, 자기소에는 일반 군현의 邑司와 유사한 구조의 所司가 존재하였으며, 다수로 출발한 자기소가 大口所 중심의 운용 체제로 귀

57) 尹龍二·金善基·한정화, 2001 『扶安 柳川里 7區域 靑瓷窯址群 發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博物館·全羅北道 扶安郡

58) 박종진과 徐聖鎬도 이 점을 지적하였다(박종진, 앞의 책, 117쪽 ; 徐聖鎬, 앞의 책, 75쪽).

결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론 가운데 자기소의 전개와 관련된 그것은 자기소로 추정되거나 자기소였을 가능성이 있는 여덟 개의 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조사·연구의 진전에 따라 더 많은 자기소의 존재가 밝혀지거나, 여덟 개의 예 가운데 실제적으로 자기소가 아닌 곳이 드러난다면, 그러한 결론은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큰 줄기는 별다른 변함이 없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편, 大口所 중심의 자기소체제가 성립된 것이 고려국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고려국가는 왜 이 시기에 그와 같은 자기소 운용 정책을 추구한 것일까 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 점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단서는 찾을 수 없지만, 일단 자기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공납 청자의 제작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大口所와 그 밖의 다른 자기소들에서 생산된 청자의 질적 차이가 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 공납용 청자 자체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높은 품질을 요구했으리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大口所에서 일찍부터 초벌구이법(素燒法) 등을 채택하여 고급의 翡色靑磁를 생산한 반면,<sup>59)</sup> 그 밖의 대부분의 자기소들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12세기 초기에 자기소에서 匠人들의 도파 현상이 심화된 것도(사료 A-② 참조) 또 다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다수의 자기소를 분산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자기소를 집중적으로 운용하는 편이 관리적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59) 李喜寬, 2003 앞의 논문, 27-30쪽.

고려의 자기소가 大口所 중심 체제로 운용되면서 大口所의 청자 양상은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청자의 품질이 더욱 향상되어 翡色靑磁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仁宗 원년(1123)에 고려에 사신으로 온 徐兢은 이를 두고 翡色靑磁가 “근래에 와서 制作이 정교하고 色澤도 더욱 좋아졌다”고 하였다.<sup>60)</sup>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翡色靑磁들은 그 대부분이 이 시기에 제작된 것들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주로 王室이나 朝廷에서 필요로 했을, 다양한 기형의 香爐를 비롯한 禮器들과 각종 裝飾用 청자들이 그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청자들 가운데 특히 제기의 경우는 국가의 요구에 의해 엄격한 법식에 따라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그러한 容器들의 見樣이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61)</sup> 이러한 청자의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자기소가 大口所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국가의 통제가 훨씬 강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北宋 末期에 이르러 朝廷의 명령에 의하여 汝窯에서 御用磁器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sup>62)</sup> 이 御用磁器들은 宋代에 제작된 磁器 가운데 최고봉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汝窯의 御用磁器는 그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되었다. 그 이전에는 越州窯·定窯·耀州窯 등 여러窯에서 자의적으로 제작한 다양한 고급 磁器를 공납받아 御用磁器로 충당한 반면, 汝窯에서는 祭器를 비롯한 禮器의 경우 이른바 ‘製樣須索’의 제도—朝廷에서 지방의 私窯에 見樣을 내려

60)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32 器皿 3 陶尊.  
 61) 이 시기에 見樣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李鍾政이 이미 언급하였다(2004 『고려시대 청자가마의 구조와 생산방식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45, 韓國上古史學會, 97쪽).  
 62) 汝窯에 대한 연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들로 中國古陶瓷研究會 編, 2001 『中國古陶瓷研究』 7, 文物出版社, 1-139쪽에 실려 있는 다수의 논문들을 참조하라.

보내 그에 따라 容器를 제작하게 하는 제도—에 의해 제작한 것이다.<sup>63)</sup> 이러한 ‘製樣須索’의 汝窯는 北宋官窯의 모태가 되고 南宋 초기의 低嶺頭窯(‘製樣須索’의 窯)를 거쳐 南宋官窯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北宋 말기 이후 御用磁器는 汝窯—北宋官窯—低嶺頭窯—南宋官窯로 이어지는 ‘製樣須索’의 窯와 官窯에서 집중적으로 제작된 셈이다.

高麗의 翡色靑磁와 汝窯와의 親緣性은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sup>64)</sup> 최근에는 기형·제작기법 등의 측면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으며,<sup>65)</sup> 이제 양자의 영향관계는 거의 의심할 바가 없는 일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거의 동일한 시기에 고려의 자기소 운용이 大口所 중심 체제로 집중화된 것과 汝窯에 ‘製樣須索’의 임무가 부과된 이후 御用磁器를 ‘製樣須索’의 窯와 官窯에서 집중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한 것과의 관련성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한 일일까. 현재의 연구 수준에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좀더 깊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청자, 瓷器所, 所司, 所吏, 大口所

63) ‘製樣須索에 대해서는 鄭嘉勳 2004 『說“製樣須索”』,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를 참조하라.

64)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32 器皿 3 陶爐.

65) 小林仁, 2004 『高麗翡色靑磁と汝窯—近年の考古發掘と研究成果から—』 『高麗靑磁の誕生—初期高麗靑磁とその展開—』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 Jagiso(瓷器所) and its Development in the Goryeo Dynasty

Lee, Hee-Gwan

Two opinions exist regarding the characteristic of local governance system of Jagiso which is deeply concerned with proving its uniqueness. One opinion is that So including Jagiso wa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central authorities in terms of governance system as a separate administrative district from general Gunhyeon(郡縣), and the other opinion is that it was set up in the villages(村) of general Gunhyeon and thus, under the control of not the central authorities but Gunhyeon.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literatures and evidences in a critical manner, however, the former is deemed to be proper.

Recently, an opinion is strongly rising that the headquarter of So(所) and the hereditary functionaries of So did not exist in So including Jagiso(瓷器所). However, seen from the inscription of Celadon Inkstone with 「Sinchuk(辛丑)」 inscription, there is no room for doubt that they existed in Jagiso. The headquarter of So consisted of the head and the vice head in the hereditary functionaries, Saho(司戶), Sabyeong(司兵) and Sachang(司倉) in order like general Gunhyeon. For Daeguso(大口所), a representative Jagiso, the members with family name Seo(徐) dominated the headquarter of So, successively holding official duties of the hereditary functionaries of So.

In the Goryeo Dynasty, Jagiso had been run in multiple numbers at the early stage, while it had increasingly turned to Daeguso as the production and tribute payment of celadons were discontinued in Jagiso except Daeguso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intention at the later stage. Such Jagiso maintained the system of So and paid the three kinds of taxes(三稅) to the government even if they lost the function as Jagiso.

Key Words : Celadon, Jagiso(瓷器所), the headquarter of So,  
the hereditary functionaries, Daeguso(大口所)



<그림 1> 靑磁象嵌菊牡丹文「辛丑」銘벼루, 湖巖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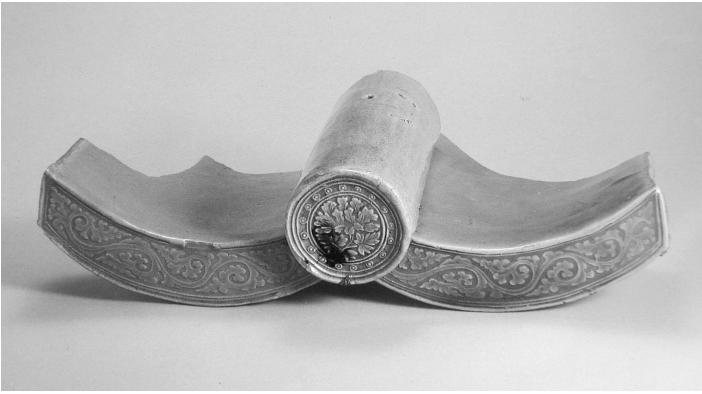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1의 銘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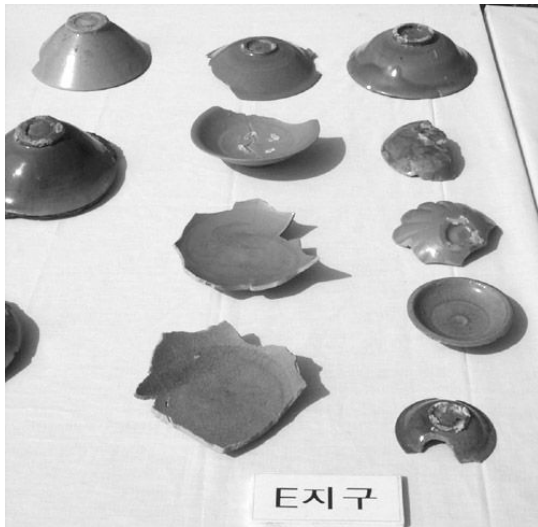
<그림 3> 鎭西里 18號窯址 출토 靑磁片 및 窯道具



<그림 4> 龍雲里 63號窯址 출토 靑磁片, 康津靑磁資料博物館



<그림 5> 沙堂里 7號窯址 출토 靑磁기와, 國立中央博物館



<그림 6> 三興里 E地區 출토 靑磁, 國立光州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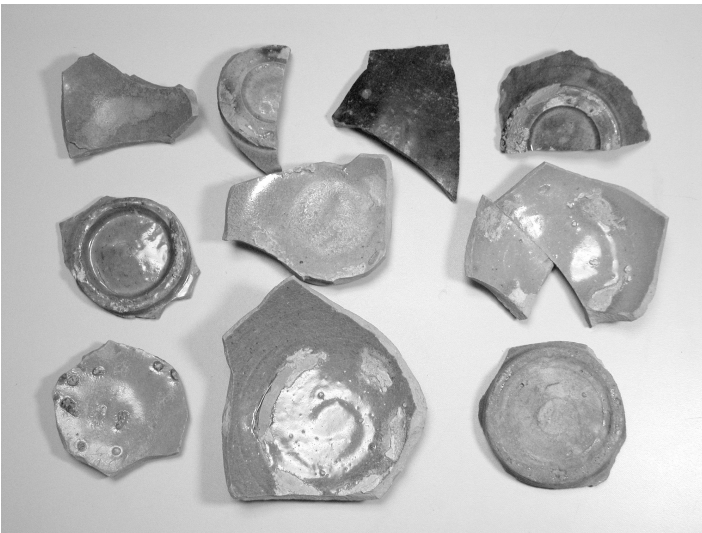
<그림 7> 龍溪里窯址 출토 靑磁片



<그림 8> 盤巖里窯址 출토 靑磁片



<그림 9> 雲垞里窯址 출토 靑磁片



<그림 10> 新德里窯址 출토 靑磁片